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가합50888 판결 [금전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 문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준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알파로

담당변호사 모소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현일

변론 종결2018. 8. 22.

판결 선고2018.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24,893원, 피고 B에게 20,949,929원, 피고 C에게 38,841,9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A에게 그 중 477/56,233 지분에 대하여, 피고 B, C에게 각 그 중 318/56,233 지분에 대하여,

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A에게 그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에게 각 그 중 각 2/9 지분에 대하여,

2014. 1. 17.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9,383,670원¹⁾, 피고 B에게 24,922,446원, 피고 C에게 42,922,446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A에게 477/56,2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에게 318/56,23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A에게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에게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1. 17.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피고는 E의 자녀이다.

나. E은 2012. 7. 27. 소외 F에게 의정부시 G 임야 25,488㎡(위 토지는 2014. 7. 10. H 7,676㎡, I 7,202㎡로 분할되어 10,610㎡가 되었다가, 2017. 5. 16. 다시 J가 4,363㎡로 분할되어 6,247㎡가 되었다) 중 일부(구체적으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8. 29.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2013. 12. 2.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망인의 재산 일체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4. 1. 1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의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취득세 합계 22,318,480원이 부과되었다.

마.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0. 16.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의 본소와 F의 반소 중 토지분할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는 F에게 G 임야 중 6,088/6,247 지분에 관하여 2012.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892(본소), 2014가합2904(반소)]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5. 10. 30.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바. 한국도로공사는 K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한편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번 중심으로 표기한다)를 수용하였고, 2014. 10. 17. 위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54,807,990원을 지급하고, 2015. 11. 9.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54,207,200원(이하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으나, F이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7982)을 받아 이에 대한 확정 문제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554,207,200원을 공탁하였다.

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2. 24.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L)를 통하여 위 바.항의 공탁금 554,207,200원 중 260,000,000원을 압류·전부채권자인 F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294,257,916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 피고는 2016. 1. 15. 위 294,257,916원을 지급받았다.

아.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95,823,540원, 지방소득세로 9,255,680원 합계 105,079,22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피고는 2016. 2. 1. 위 사.항과 같이 지급받은 보상금 중 일부로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자.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9130(본소), 2015나29147(반소)]의 계속 중이던 2016. 8. 26. '피고는 F에게 G 임야 중 6,088/6,247 지분에 관하여 2012.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F은 2017. 5. 29. 피고에게 위 나.항의 매매계약상 잔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5. 30. G 토지 중 6,088/6,247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카. 피고는 2017. 5. 29.경 위 바.항의 배당절차에서 F에게 배당된 금원 260,000,000원을 포함하여 공탁금 잔액 260,287,425원을 지급받았다.

타. 한편 망인은 M조합의 조합원이었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가입비 환급 명목으로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수행, 망인의 상속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관상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들 및 피고가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피고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 중 원고 A에게 3/9 지분을, 원고 B, C에게 각 2/9 지분을 지급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상속재산 중 현금 관련 부분

피고가 상속재산 중 현금과 관련하여 단독 상속한 재산은 584,529,660원인데,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상속 채무 등을 해결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고, 원고들이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위 금액에 더하여 남은 금액을 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후 다시 피고들이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7,383,670원, 원고 B에게 24,922,446원, 원고 C에게 42,922,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 관련 부분

피고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G 토지 중 F에게 이전된 6,088/6,247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59/6,247 지분, I, J, N 각 토지인데, 피고는 이를 위와 같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① G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그 중 477/56,233($= 159/6,247 \times 3/9$) 지분에 대하여, 원고 B, C에게 그 중 각 318/56,233($= 159/6,247 \times 2/9$) 지분에 대하여, ② I, J, N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그 중 3/9 지분에 대하여, 원고 B, C에게 그 중 각 2/9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내용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실제로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포기한 채 상속재산을 전부를 피고에게 단독으로 상속하게 할 의도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관련소송, 상속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로 망인의 재산을 피고 명의로 상속한 것으로써, 이러한 처리가 끝나면 상속분에 따라 상속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는 N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렵 683,078,400원($= 2014. 1. 1. \text{공시지가 } 26,800\text{원/m}^2 \times 25,488\text{m}^2$)에 이르렀고, 당시에는 이미 K 고속도로 건설의 사업구역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어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재산 가치를 지닌 본인들의 상속분을 포기하였음에도, 당시 피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가를 얻은 바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렵 망인의 재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체국금융, 금융감독원, S협회 등에 망인의 금융자료를 요청하여 망인의 예금 및 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는데, 망인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원금 기준 합계 125,000,000원가량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들이 이러한 채무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합계 22,318,480원이 부과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 A가 2014. 1. 16. 피고의 처 소외 ○ 명의의 계좌로 18,000,000원, 원고 C가 같은 날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 A, C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포기할 의사였다면, 상속을 통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의 취득세를 대신하여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C는 2014. 10. 17. H 토지 지상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54,807,99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8,2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관련소송의 비용, 망인이 생전에 미지급한 굴착기 공사비용,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권 관련 비용, 망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상속 관련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 C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러한 상속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H 토지 지상 제3자 소유 나무 보상비 및 이전비	15,000,000원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3,000,000원
망인의 채무변제(굴착기 작업비용)	3,000,000원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압류·전부명령 등에 관한 인지대 등 납부	3,000,000원
H 토지 지상 고사목 제거작업 비용	1,000,000원	지하수개발 관련 비용	5,000,000원
양봉업자 이사비용	1,500,000원	철거 비용 지출	3,000,000원
이 사건 관련소송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5,000,000원	기타 관리비용(굴착기 작업비용, 컨테이너 이동 비용)	8,000,000원
합계		합계	48,200,000원

5) 한편 원고 B도 망인이 여동생 P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10,000,000원의 채무를 망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로 대물변제하였고, 망인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미납한 세금 2,2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소송의 측량비용 800,000원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전후하여 상속 관련 사무를 처리한 바 있다.

6)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0.경 원고 B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시 2017. 7.경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C, B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러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반환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이미 상속을 포기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나.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배

1) 현금 관련 상속재산 가)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의 현금 관련 상속재산이 ① 2016. 1. 15.자 공탁금 294,257,916원, ② 2017. 5. 29.자 공탁금 260,287,425원, ③ F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금 25,000,000원, ④ M조합 가입비 환급금 5,000,000원, ⑤ H 토지 지상 지장물 관련 수용보상금 54,807,990원의 합계 639,353,331원(= 294,257,916원 + 260,287,425원 + 25,000,000원 + 5,000,000원 + 54,807,99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상속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원고들 및 피고가 상속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① 원고 A, C가 피고의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2014. 1. 16. O의 계좌로 송금한 23,000,000원, ② 원고 B이 납부한 망인 소유 자동차에 관한 미납세금 2,200,000원, ③ 원고 B이 납부한 이 사건 관련 소송 측량비 800,000원, ④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05,079,220원, ⑤ F과 사이에 G 중 일부에 관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6,163,120원 및 지방소득세 616,310원의 합계 6,779,430원, ⑥ 망인의 M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25,000,000원, ⑦ 원고 C가 3.의 가. 4)항 표와 같이 상속 관련 사무로 지출한 48,200,000원의 합계 329,078,650원(= 23,000,000원 + 2,200,000원 + 800,000원 + 105,079,220원 + 6,779,430원 + 125,000,000원 + 48,2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대출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⑥의 금원을 초과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거나 망인의 Q, R 등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가 존재한다고 항변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재산에서 지출하였음을 자인하는 대출금 원금 125,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 145,000,000원 - 125,000,000원)을 상속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이나 망인의 추가적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잔존 현금 관련 상속재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 대상이 되는 현금 관련 상속재산은 310,274,681원(= 639,353,331원 - 329,078,650원)이다.

라) 안분 후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를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후,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하면 그 잔액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91,424,893원 [= (잔존 현금 상속재산 310,274,681원 × 상속분 3/9)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원 - 2017. 7.경 지급받은 1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원고 B: 20,949,929원 [= (잔존 현금 상속재산 310,274,681원 × 상속분 2/9) - 2015. 10.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8,000,000원 - 2017. 7.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

(3) 원고 C: 38,841,939원 [= (잔존 현금 상속재산 310,274,681원 × 상속분 2/9) - H 토지 지상 지장물 관련 수용보상금 잔존액 107,990원{수용보상금 54,807,990원 - 지급액 54,700,000원(= 3.의 가. 4)항의 48,200,000원 + 피고의 생활비로 송금한 6,500,000원)} - 2017. 7.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

2) 부동산 관련 상속재산 가) 망인의 잔존 상속재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현재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G 토지 중 159/6,247 지분, I, J, N 각 토지이다.

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지분

(1) 원고 A

① G 토지 중 477/56,233 지분(= 159/6,247 지분 × 상속분 3/9)

② I, J, N 토지 중 3/9 지분(상속분에 따라)

(2) 원고 B, C

① 각 G 토지 중 318/56,233 지분(= 159/6,247 지분 × 상속분 2/9)

② 각 I, J, N 토지 중 2/9 지분(상속분에 따라)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1,424,893원, 피고 B에게 20,949,929원, 피고 C에게 38,841,9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G 토지 중 피고 A에게 477/56,2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에게 318/56,233 지분에 관하여, I, J, N 토지 중 피고 A에게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에게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4. 1. 17.자 합의(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진영

판사유병호

판사고준홍

별지

1) 원고 A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는 99,383,670원의 지급을, 청구원인에서는 97,383,67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하에서는 원고 A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99,383,670원을 기준으로 본다.